

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일 : 2021.06.11 (금)

3. 변경 사유 :

- 비교지수 변경 : KOSPI Index 90% + Call 10% → KOSPI Index 100%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(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기재)

▣간이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0.07.31 기준	2021.04.30 기준
투자실적추이	2020.08.17 기준	2021.05.21 기준
투자실적추이 - 비교지수	주 1) 비교지수: KOSPI Index 90% + Call 10%	주 1) 비교지수: KOSPI Index 100%
운용전문인력	2020.09.14 기준	2021.05.21 기준

▣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0.07.31 기준	2021.04.30 기준
투자실적추이	2020.08.17 기준	2021.05.21 기준
투자실적추이 - 비교지수	주 1) 비교지수: KOSPI Index 90% + Call 10%	주 1) 비교지수: KOSPI Index 100%
운용전문인력	2020.09.14 기준	2021.05.21 기준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-	바.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해당사항 없음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2020.09.14 기준	2021.05.21 기준

① 책임운용전문인력		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]	2020.09.14 기준	2021.05.21 기준
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투자전략	<p>-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(KOSPI Index X 90%) + (Call X 10%)</p> <p>- 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총액의 90%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KOSPI 지수는 한국 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으며, Call 수익률은 현금성 자산과의 비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. 단,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,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</p>	<p>-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Index 100%</p> <p>- 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총액의 90%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KOSPI 지수는 한국 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. 단,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,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</p>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동종유형 총보수	2020.07.31 기준	2021.04.30 기준
제 4 부.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회사개요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	-	- 일반사무관리회사: 우리펀드서비스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2019.12.31 기준	2020.12.31 기준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운용자산 규모	2020.09.11 기준	2021.05.21 기준
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(4)반대매수청구권

-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 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,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,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